

중앙감사회의 2023-2학기 회계 가이드라인

2023.09.04.(월)

1. 중앙감사회의 진행 배경 설명

총학생회 회칙 제58조의 4(중앙감사회의)에 의거하여

- 총학생회장은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 소집 이전까지 중앙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, 중앙감사회의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. 중앙감사회의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, 단과대 학생회장단,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하되, 단위별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. 중앙감사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.

- 중앙감사회의의 업무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.

1. 해당 학기 회계 가이드라인 작성(단, 가이드라인에는 예·결산안 작성 요령,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, 매월 결산 보고 방식, 회계 감사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.)

2.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 검토(단, 해당 학기 중앙감사회의 개최 이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 대상으로 한다.)

- 단과대학 및 학과(부) 회계 감사는 해당 단위의 학생회칙에 따라 구성 및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 조항에 준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2. 중앙감사회의 2023-2학기 회계 가이드라인

□ 2023-2학기 회계 가이드라인

1) 예·결산안 작성 요령

1) 실제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하였던 예산안 및 결산안 양식 차용(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)

2) 임기 초 부서별 사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금학기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식

*각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예·결산안 작성

2)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

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⑤ 구매영수증 ⑥ 간이영수증(거래명세표) 단, 단순 송금 시 송금 받는 자가 거래 관계자임을 증빙할 자료를 필히 첨부한다.

3) 매월 결산 보고 방식

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할 수 있도록 회칙화 한다.

4) 회계 감사 요령

1. 정기 감사 : 전학대회(또는 단학대회)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이를 정기 감사로 여긴다.

2. 특별 감사 : 학부 재학생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(단, 특별 감사 종료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)